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12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17.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11. 20.
다. 상정일자 : 2023. 11. 28. 기획행정위원회 상정·보류
라. 상정·의결일자 : 2023. 12. 04.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수정가결

2. 개정이유

- 가. 비효율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업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민선8기 주요 과제인 고성군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함
나. 갈모봉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운영과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인력 보강으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을 적기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3)
1) 집행기관별: 749명(변동 없음)
가) 본청: 353명 → 365명 (증12명)
나) 직속기관: 141명 → 142명 (증1명)
다) 사업소: 41명 → 28명 (감13명)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복지지원과-41143(2023. 10. 27.)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3-1550호
 - 가) 예고기간: 2023. 10. 12. ~ 11. 01.(20일간)
 - 나) 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민선8기 주요사업과 현안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 고성군 지방공무원 총정원 749명을 증감 없이 집행기관별로 조정
 - 별표3 개정안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총계	749	365	20	142	28	194
정무직계	1	1				
군수	1	1				
일반직계	717	360	20	116	27	194
3급	1	1				
4급	4	3		1		
5급	44	19	3	6	2	14
6급 이하	662	337	17	103	25	180
전문경력관	6			6		
별정직계	1	1				
6급상당 이하	1	1				
연구직계	5	3		1	1	
연구관	0					
연구사	5	3		1	1	
지도직계	25			25		
지도관	1			1		
지도사	24			24		

- 기관별 정원 조정안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현행	749	353	20	141	41	194
변경	749	365	20	142	28	194
증감	-	12	-	1	△13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2023.11.8.~11.27.), 안 제71조
 -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과 실·국장의 직급이 4급으로 동일하여 지휘·통솔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인구 5만이상 10만미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
- 본 개정안은 민선8기 주요사업 추진과 관광분야 사업 확대 등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대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임.
- 집행부가 제안한 정원에 관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집행부가 당초 입법예고한 조례안의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과 달리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추가 반영하였는데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재검토 필요성이 있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2023.11.27.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법제심사, 공포 등의 행정절차를 남겨둔 상황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예정사항을 반영한 본 조례안의 시행효력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7. 토 론: 없음.

8. 심사결과: 2023. 12. 04. 수정가결

- 붙 임: 1. 수정안 제안서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3. 수정안 대비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제안서

의안번호	제2712호 관련
------	--------------

발의연월일	2023. 12. 04.
발 의 자	김희태 의원

1. 수정이유

- 조례안의 내용 중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중 3급 1명 신설에 대해서는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중에 있어 조례의 시행이 유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안 별표 3의 “일반직 3급 본청 1명”을 삭제하고, 일반직 4급 총계 “4”를 “5”로 하고 본청 “3”을 “4”로 수정함.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별표 3의 “일반직 3급 본청 1명” 을 삭제하고, 일반직 4급 총계 “4” 를 “5” 로 하고 본청 “3” 을 “4” 로 한다.

